**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서**

**수신자 성명: 스튜디오1도씨 대표님**

**주 소 :**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48번길 10-1

**연락처 : 010-9984-3732**

발신자 성명 : (주)아이버스터 법무팀 이미선팀장

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45(연남동) 제일충무빌딩5층
연락처 : 010-3146-2193

제목: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

발송자는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의 위임을 받은자

위임인의 상표권 내용

상표명 : 그립톡 및 GRIPTOK
등록번호 : 제 40-1500633 호 / 제 40-1527813 호 / 제 40-1236760 호

소유자 :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

안녕하세요 (주)아이버스터 법무팀 이미선 팀장입니다.

귀사가 사용 중인 **“그립톡”** 및 **“GRIPTOK"**은 (주)아이버스터 대표 남동훈에 의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, (주)아이버스터 대표이사 남동훈이 상표권 등의 **지적재산권**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**대법원 2012.5.24선고2010후3073** 판결에 따라 타인의 **등록상표** (본 사건 “그립톡” 및 “GRIPTOK”)를 검색엔진 등에서 키워드로 사용 시 **상표권 침해**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또한, **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류 제2조 1호**에 의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**타인의 상표**(본 사건 “그립톡” 및 “GRIPTOK”)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, 동일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상표법 제66조는 “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(주)아이버스터 혹은 상표권 소유자 남동훈의 허가 없이 "그립톡" 및 “GRIPTOK”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상표법에 의하여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/형사상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안타깝게도 귀사에서 진행하는 상품이 (주)아이버스터의 "그립톡"의 **지적재산권을 침해**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

따라서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**민사상 불법 행위 및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**에 해당될 수 있으며, 발송인은 귀사를 상대로 **민, 형사상의 법적 책임**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귀사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로서 상표법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(상표법 제230조),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.

귀사가 사용 중인 “그립톡” 및 “GRIPTOK”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알리는 바, 등록상표 사용 및 재발방지 각서, 그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, 본 문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이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을 시, 부득이 귀사를 상대로 제반 비용을 포함한

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※ 상표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접수가 되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**

**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은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정해지며, 이를 토대로 민사재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**손해배상금 청구 합의서**

㈜아이버스터 및 남동훈과 스튜디오1도씨 대표는 본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 각 조건을 합의하고, ㈜아이버스터 및 남동훈은 스튜디오1도씨 대표가 아래 각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본 사안에 대하여 스튜디오1도씨 대표에게 민ᆞ형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.

1. 스튜디오1도씨 대표는 본 합의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㈜아이버스터에 3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 - 계좌 : 카카오뱅크 7979-85-69429 남동훈

2 .스튜디오1도씨 대표는 합의 이후 동일 및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시 민ᆞ형사의 책임 및 상관행,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3. ㈜아이버스터와 남동훈, 스튜디오1도씨 대표는 본 합의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내부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행하였음을 확약한다.

4. 의무를 위반할 경우(본 합의에 따라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위반한 본 합의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1억 원을 지급한다.

5. 본 합의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하고,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6. 본 합의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외부 발설을 금지한다

본 합의의 진정한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원본을 작성하고, ㈜아이버스터, 남동훈 및 스튜디오1도씨 대표 각 당사자가 기명,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주식회사 아이버스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45(연남동) 제일충무빌딩5층

대표이사 남 동 훈 (인)

남동훈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45(연남동) 제일충무빌딩5층

스튜디오1도씨 대표 (인)

2023.  11.  10